

##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

생년월일 :

성명 :

(서명)

채용 결격사유	해당여부	서명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여[ ], 부[ ]	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여[ ], 부[ ]	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여[ ], 부[ ]	
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	여[ ], 부[ ]	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	여[ ], 부[ ]	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	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여[ ], 부[ ]	
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여[ ], 부[ ]	

상기 본인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입사함에 있어 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, 입사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**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**